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0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병도,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한 신, 허 훈,
황유정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 전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과 권리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이에,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모성권·부성권 보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모성·부성의 권리 보</u> <u>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u> <u>관의 장과 사용자는 임신·출산</u> <u>·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u> <u>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u> <u>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u> <u>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u> <u>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모성권, 부성권 보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과 조례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